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74 발의연월일: 2022. 8. 17.

발 의 자:김병기·김주영·문진석

소병철 • 이동주 • 장경태

정일영 · 한준호 · 홍기원

홍성국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은 30일 이내에만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등을 운행하면서 우

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	①
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	
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차인도일부터 <u>30일</u> 이내에 해	<u>90일</u>
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